

#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	3332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  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'16.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
- 나. 현재 시에서 소유·운영 중인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와 서울에너지공사 부지 내에 설치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10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
- 다. 「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수권자 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개요

- 대 상 : 서울에너지공사
- 출자규모 : 1,883백만원 (시설용량 총 531.29kW)

구 분	수량	시설용량 (kW)	출자규모 (백만원)	비고
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(학교 태양광 등)	8개소	397.78	545	소규모태양광 포함 (1개소)
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	10개소	133.51	1,338	
합 계		531.29	1,883	

\* 2개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출평균액으로 출자규모 산정(세부내역 붙임 참조)

## 나. 출자 필요성

-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직영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를 「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며
- 서울에너지공사 부지 내(건물 등)에 설치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 단지는 2022년 성능검증 종료 후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, 지속적인 신기술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실증단지 운영 대행사업을 수행해 왔으나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서울에너지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

#### ○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② <생략>  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○ 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이재은 (☎ 2133-3572)